

제조물책임과 대응전략

김 창 수

<국제경영기술연구원>

I.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1. 정의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과정에 참여한 자가 그 상품으로 인해 야기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

2. 배경

- 고도의 산업화에 의한 문제점 발생
 - 소비생활 증대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위험
 - 생산위험 및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여도 결함상품 필연적 발생
 - 각종 상품으로부터 피해 심각

3. 제조물책임법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률
- 리콜제도
 -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교환·환불·파기 등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교환·환불·파기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

- 제도 성격
 - 제조물책임법 : 사후구제제도
 - 리콜제도 : 사전예방제도

4. PL법 제정

- 제정논의 : 1970년대
- 제 정 : 1999. 12. 16
- 시 행 : 2002. 7. 1

II. 제조물책임법 제정배경

1. 제정이유

- 결함상품에 의한 피해급증
- 기존법에 의한 피해구제 한계(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 국제적인 조화필요

2. 제조물책임법 시행효과

- 긍정적인 면
 - 사후 피해구제가 원활함
 -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의한 사고예방
 - 기업 경쟁력 향상

- 부정적인 면
 - 물가상승 예상
 - 사회적비용 증가 예상(소송비용)
 -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지연
 - 중소기업 생산 / 판매활동 위축

3. 핵심용어

- 무과실책임
 -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원칙
- 엄격책임
 -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원칙
- 제척기간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한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제도

III.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제조물책임을 지는 경우

- 제조물의 결함 즉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져야 함
 -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성립
 - 민법의 손해배상 요건은 고의·과실인데 비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인 제조물의 결함만 증명하면 피해구제 가능

2. 제조물책임은 누가 지는가?

-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등에게 책임

3.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 미가공 농수산물과 서비스는 제조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결함이란?

-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이 포함

5.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입증책임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

6. 제조업자의 책임 대상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생명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는 모두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됨

7.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8.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또는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9. 면책특약의 효과 여부는?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임

10.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

-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제조물이 유통된 후 10년 이내

11. 민법과의 관계는 ?

-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는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

12. 제조물책임법 시행시기와 적용대상 상품은 ?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함

IV. 제조물책임대책

1. 전사적인 PL경영체제 구축

- 최고 경영자의 PL대책 추진
 - 제품의 안전성 확보
 - 고객보호를 위한 경영방침 채택
- PL담당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기업규모에 의한 PL전담부서
- 전사원 PL마인드 제고
 - 제품안전대책의 필요성
 - 제품의 설계 / 제조 / 판매 / 전과정에 걸친 안전대책 교육
- 회사의 PL대책 수립 및 추진
 - 제품의 안전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사용설명서 및 주의 / 경고표시 개선방안
 - 각종 자료의 기록 / 관리 개선방안
 - PL위험의 분산 및 PL사고 처리대책 등

2.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대책

- 설계상의 결함예방대책
 - 제품의 안전수준 설정 및 설계보완 (관련규격 / 법령기준 / PL사고사례 참고)
 - 제품의 사용방법 예측 (사용자 / 사용환경 / 제품상태 등)
 - 제품사용시의 위험성 예측 (위험발생빈도 / 위험정도 등)
 - 제품의 위험성 제거 (제품품질의 안정화 / 안전장치 추가 / 주의 및 경고표시의 개선 등)
 - 안전성의 확인 및 검사 (안전성 검토내용의 기록 / 보관)
-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 원재료 및 부품관리개선 (구입사양 / 납품검사 / 보관 / 관리방법 등)
 - 제조/검사 관리개선 (제조공정 / 표준화 / 품질관리 / 검사방법등)
 - 설비관리개선 (각종 설비의 사용 / 유지보수 방법 등)
 - 반복적인 PL교육 실시 (사내직원 / 납품업체 등)
- 출하 및 판매단계의 PL대책
 - 출하검사 철저 (계약사항 이행여부 / 품질검사 실시여부) (제조번호 / 제조일자 및 경고라벨 표시여부) (제품에 적합한 취급설명서 첨부여부) (패킹상태 / 취급상의 안전성 등)
 - 판매관리 철저 (판매원에게 제품의 특성 교육강화 : 주의 / 경고사항) (각종자료에 안전 과대광고 금지) (제조자와 판매자의 책임한계 규정명시)
 - 사후관리 철저 (아프터서비스 / 리콜대책의 충실화) (제품 폐기시 PL대책강구)
- 경고라벨 및 취급설명서 작성
 - 경고라벨 작성

(위험의 정도 명시 : 위험 / 경고 / 주의)
 (위험의 종류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 명시 : 고전압 / 인화물질 / 감전 / 사망 등)
 (위험 회피방법 명시)
 (경고라벨은 가능한 위험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경고문자의 크기는 안전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제작)
 (경고라벨은 제품수명과 동등한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여 견고하게 부착)

- 취급설명서 작성

《안전을 위해 사전에 읽어주세요》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 제품의 사진 / 성능 / 기능 / 사용방법 / 포장의 개봉 / 설치 / 조작 / 보수 / 점검 / 폐기 / 기타 주의사항 등 명시)
 (제품명칭 / 형식 / 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 표시)
 (전문용어 / 외래어 사용을 회피하고 읽기 쉽게 글씨의 크기 조정(필요시 삼화사용))

3. 제조물책임사고의 방어(PLD) 대책

- 사고발생전의 방어대책
 - 사내의 PL대응체제 구축
(PL전담조직 / PL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내의 문서관리 체제정비
(설계관련문서(당시의 안전기준 포함)
(외주 / 납품 관련문서(설계지시서 포함)
(제조공정 / 품질관리 / 검사결과)
(판매문서 / 계약서 / 관련자료)
(애프터서비스 / 리콜기록)
 - 관련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사고원인규명 / 손해배상 /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PL사고방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 PL보험가입 사항)
(PL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 충당금의 적립)
- 사고발생후 방어대책
 - PL분쟁의 해결시스템 구축
(결함원인 규명 / 피해자 교섭 / 소송대책 등)
 - 사고발생 제품의 회수 또는 수리대책 강구
(추가 사고발생 예방 / 소비자 클레임 대응방안 등)